

2020. 12. 4.(금) 10:00

제2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8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화원 명곡산림욕장 조성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실외 산림휴식공간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에 산림휴양, 체력단련 및 생태교육 등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심형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함.

○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였지만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논공 읍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취미활동 욕구 충족 및 이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와,
-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행복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 충혼탑 정비사업

- 우리 군 충혼탑을 건립한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높이가 타지자체(17~30m)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립이 필요하고,

-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애국애족 및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공작물)을 재건립(취득)하고자 함.

○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논공읍 남리의 경우 노후저층주거지역으로 마을 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공동주차장 조성 필요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에 따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 긴급차량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

○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예연서원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마을 내 주정차차량의 급증으로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사업추진 필요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에 따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조성으로 이면도로 긴급차량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

○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3층 증축

- 달성군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 및 잉여농산물의 활용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를 2층으로 건축하여 운영 중으로
- 1층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능률이 저하,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1층에 설치한 건식가공장비 및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어 제과·제빵 시설을 3층에 설치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골자

○ 화원 명곡산림욕장 조성

- 위 치 : 화원읍 명곡리 931번지 등 3필지
- 기 간 : 2020. ~ 2021.
- 규 모 : 45,919㎡(4.6ha정도)
- 주요시설 : 산책로, 휴게정자, 야외쉼터, 화장실, 유아숲체험원 등
- 총사업비 : 43억 원(국비 2, 시비 2, 군비 39)
- 부지매입비 37억, 산림욕장 조성 4억, 유아숲체험원 조성 2억

○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 위 치 : 논공읍 금포리 1805-1번지 등 12필지
- 기 간 : 2021. 1. ~ 2022. 3.
- 규 모 : 부지면적 778㎡, 건축연면적 1,400㎡, 건물 1동(지하 1층/지상 3층)
- 주요시설

층별	면적(㎡)	내부 시설	비고
3층	400	작은도서관, 소회의실, 다용도실, 공부방	옥상, 벤치
2층	400	대회의실, 취미교실	발코니
1층	400	체력단련실, 노인쉼터, 안내실	주차장
지하	200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	

- 총사업비 : 45억 원
- 공사비 40.7억, 설계·감리비 2.2억, 예비비 0.1억, 건물보상비 2억

○ 충혼탑 정비사업

- 위 치 : 현풍읍 성하리 464번지(충혼탑 부지 내)
- 기 간 : 2021. 2. ~ 2022. 2.
- 규 모 : 부지면적 9,034㎡, 충혼탑 재건립 : 높이 20m, 폭 15m 이내

※ 현재 충혼탑 높이 9.5m, 폭 10m → 철거

- 차량진입로 및 충혼탑 계단 정비, 조명시설 정비
- 주요시설 : 충혼탑, 이미지월
- 총사업비 : 19억 원
- 충혼탑 제작설치 8억, 이미지월 제작설치 3억, 기존 충혼탑철거 0.4억
충혼탑 주변정비 7.6억(충혼탑 계단 및 차량진입로, 조명시설 정비)

○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 치 : 논공읍 남리 271번지 등 6필지
- 기 간 : 2021. 1. ~ 2021. 12.
- 규 모 : 1,988㎡(주차면수 60면 정도)
- 총사업비 : 1,980백만 원 정도(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 치 : 유가읍 가태리 572-1번지
- 기 간 : 2021. 1. ~ 2021. 12.
- 규 모 : 1,220㎡(주차면수 30면 정도)
- 총사업비 : 600백만 원 정도(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3층 증축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61번지
- 기 간 : 2021. 2. ~ 2021. 12.
- 규 모
- 부지면적 1,544.5㎡
- 건축연면적 1,492㎡(기존 2층 997㎡ -> 3층 증축 495㎡)
- 총사업비 : 18억 원
- 건축비 12억, 설계·감리비 1억, 가공장비구입비 5억
- 주요시설
- 1층 :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포장실, 위생전실

- 2층 : 다목적 가공 실습실, 단체교육장, 사무실
- 3층 : 제과·제빵 시설, 건식가공장비 설치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계			6 (10)	51,023	9,096,389	6 (10)	51,023	9,096,389
1.매입	토지			3 (10)	49,127	1,102,389	3 (10)	49,127	1,102,389
	건물								
2.교환	토지								
	건물								
3.기타	토지								
	건물			3	1,896	7,994,000	3	1,896	7,994,000
처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토지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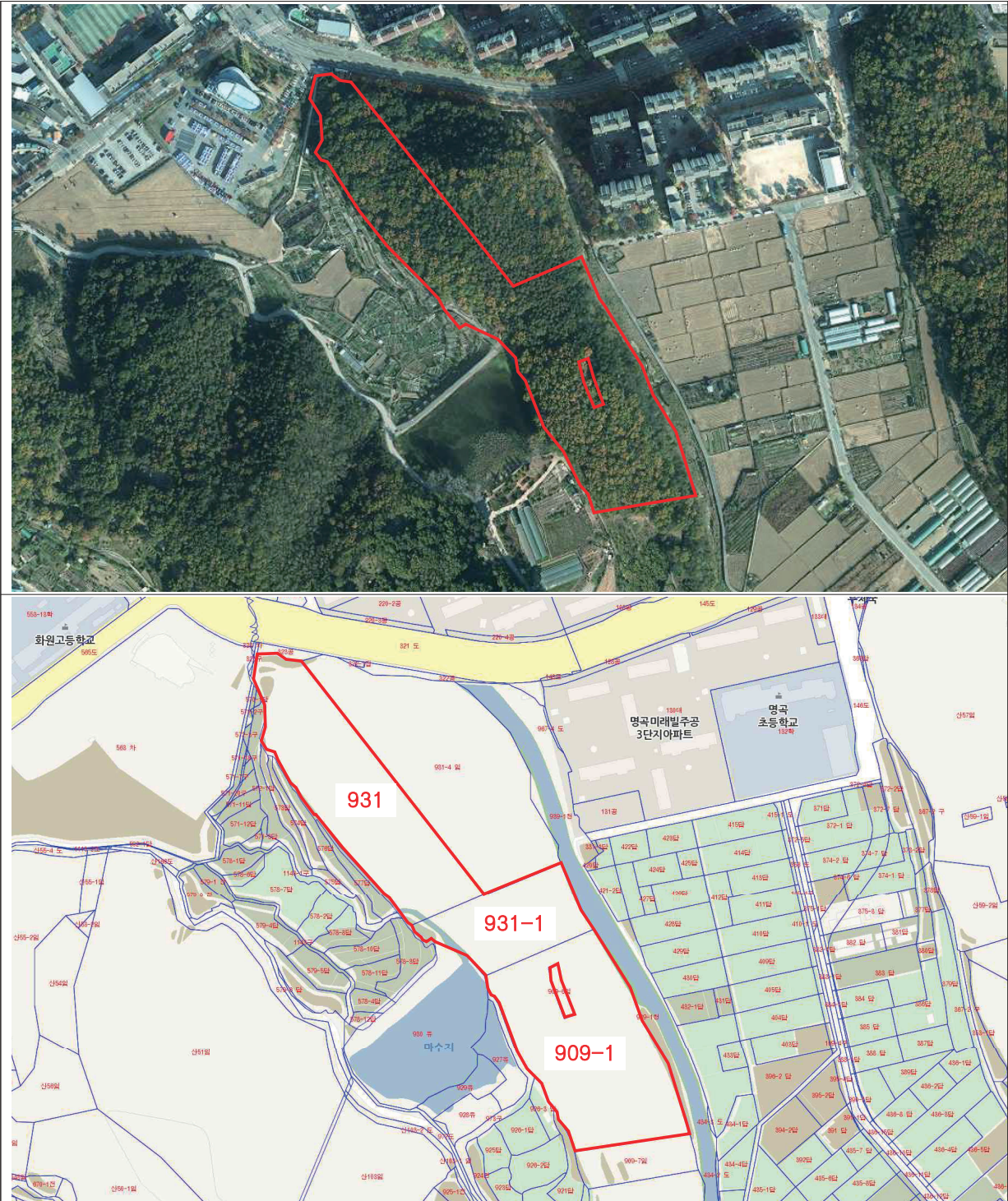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31	18,105	143,210,550	2021. 4.	회원 명곡 산림욕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01-3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원교회 대표자 신용기		
2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31-1	7,980	53,625,600						
3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09-1	19,834	137,052,940						
4 (건물)	부지 시설	부지 시설	논공읍	금포리	1805-1 1805-20 1805-21 1805-22 1805-24 1805-25 1805-26 1805-27 1805-28 1805-35 1805-36 1805-37	1,400	4,294,000,000 (건축비)	2022. 3.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현	소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 (공작물)	종교	종교	현풍읍	성하리	464	1식	1식	1,900,000,000 (사업비)	2022. 2.	충혼탑 정비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충혼탑 재건립
6	대	대	논공읍	남리	271	271	271	87,641,400	2021. 2.	논공 남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시 달서구 아외음악당로39길54, 109동 802호	안예란	
7	대	대	논공읍	남리	272	304	304	95,456,000					
8	대	대	논공읍	남리	273	410	410	128,576,000					
9	진	진	논공읍	남리	274	157	157	50,616,800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71, 1503동 806호	김미경	
10	대	대	논공읍	남리	267	605	605	189,970,000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123, 105동 1901호	유태형	
11	답	답	논공읍	남리	359	241	241	77,770,700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12	답	답	유기읍	가태리	572-1	1,220	1,220	138,470,000	202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기읍 구례길 118-5	곽동준	
13 (건물)	대	대	옥포읍	교항리	2961	495	495	1,800,000,000 (사업비)	2021. 9.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3층 증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증축

위 치 도

【화원 명곡산림욕장 조성】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931번지 등 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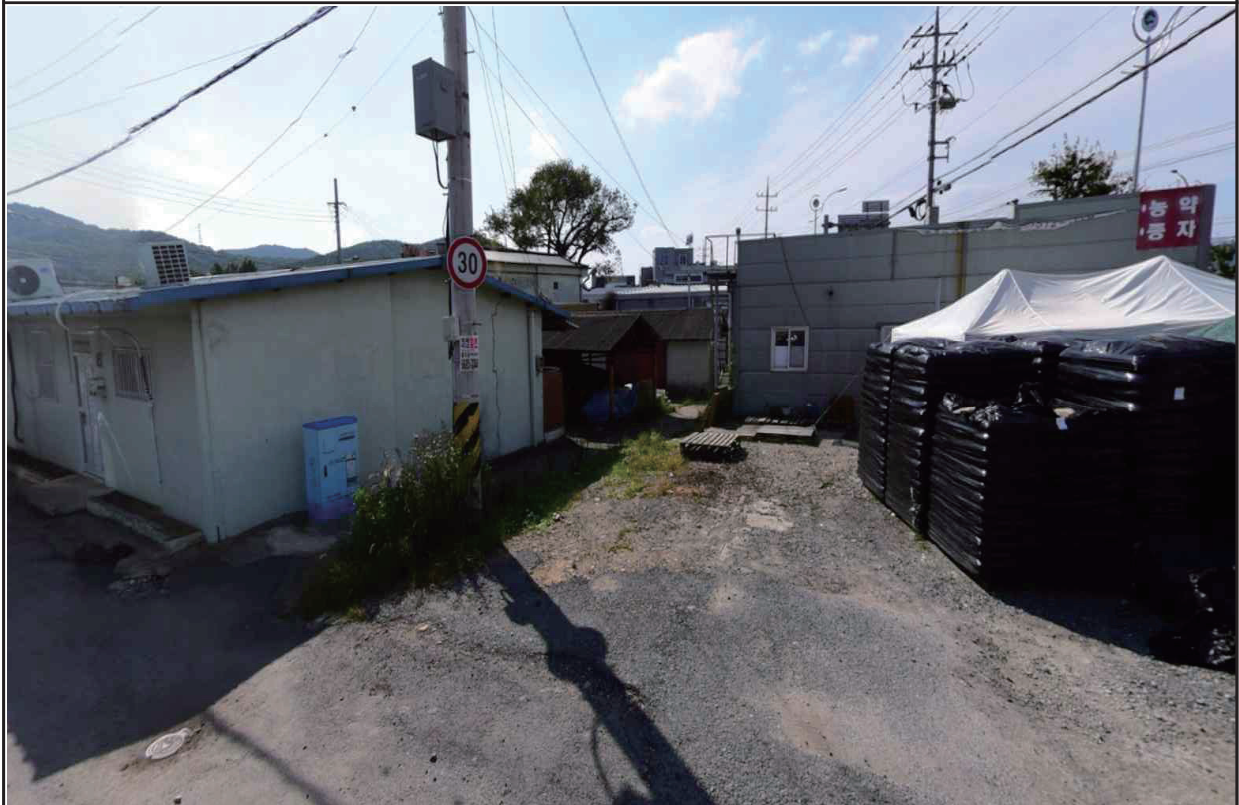
사 진 대 지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931번지 등 3필지



현 장 사 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805-1 등 12필지



위 치 도

【충혼탑 정비사업】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464번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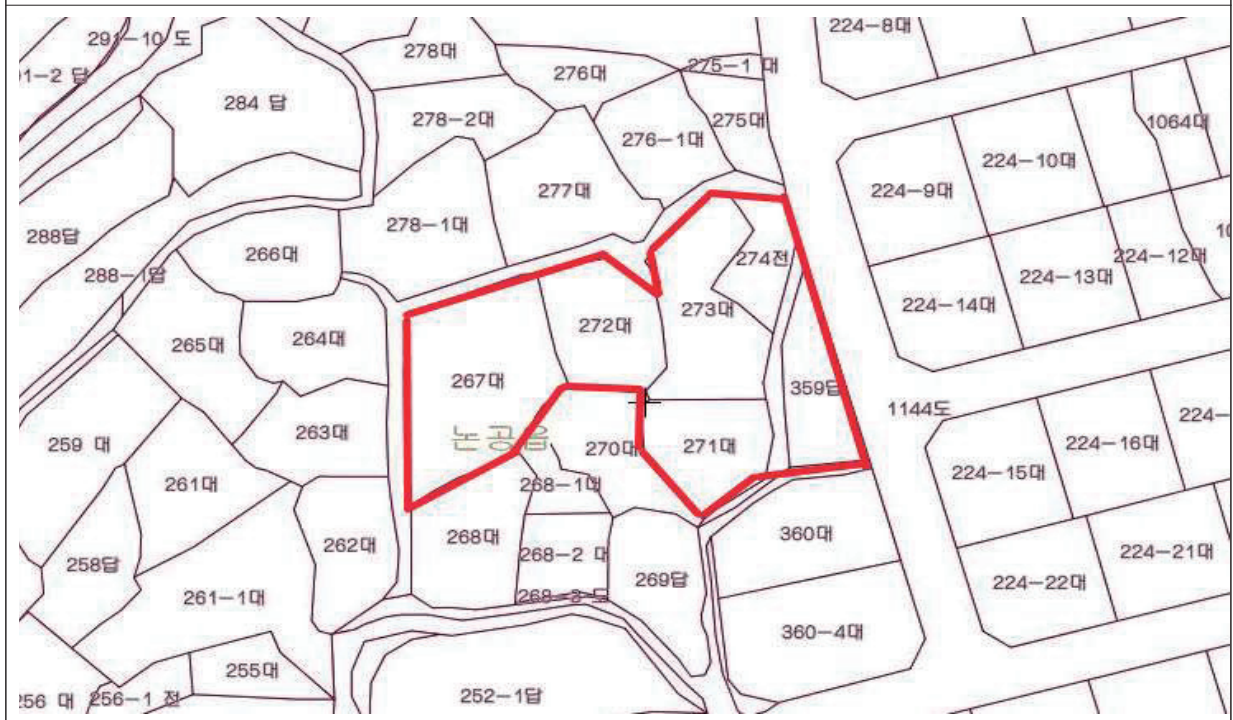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464번지



위 치 도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271번지 등 6필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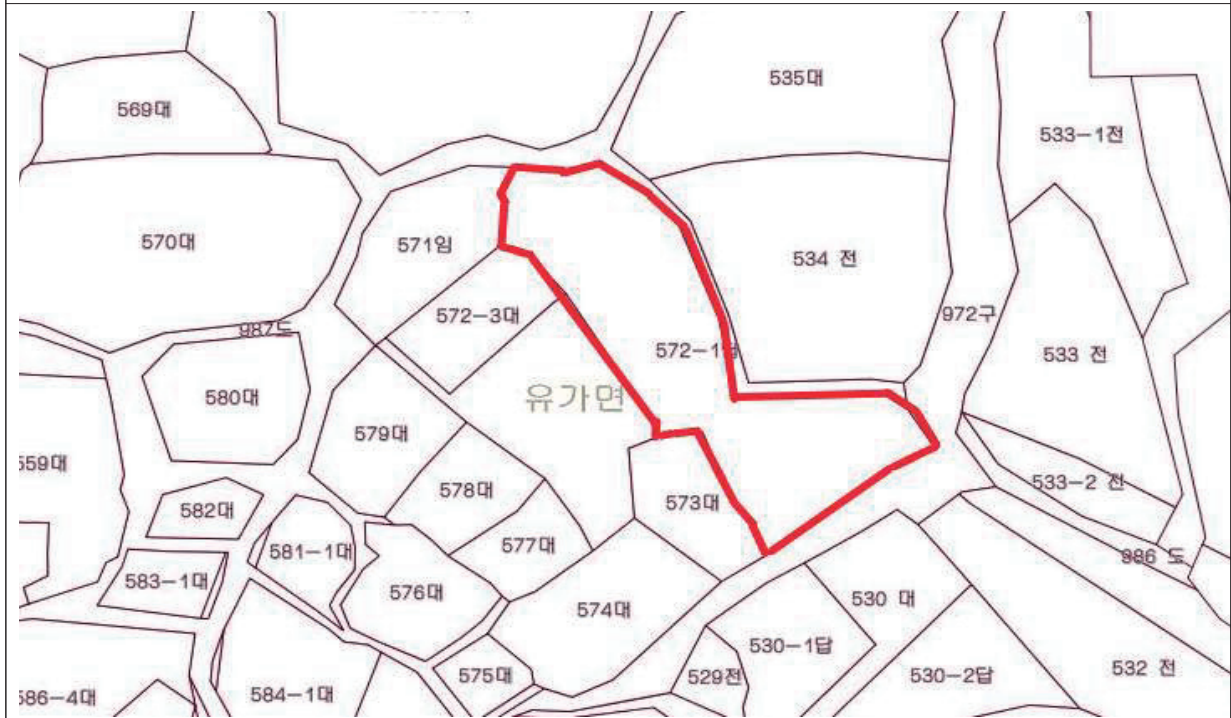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271번지 등 6필지



위 치 도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가태리 572-1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가태리 572-1번지



위 치 도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3층 증축】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61번지(농업기술센터 내)



현 장 사 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61(농업기술센터 내)



Ⅱ. 검토의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화원 명곡산림욕장 조성

- 최근 실외 산림휴식공간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에 산림휴양, 체력단련 및 생태교육 등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심형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논공 읍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취미활동 욕구 충족 및 이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와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충혼탑 정비사업

- 우리 군 충혼탑을 건립한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높이가 타지자체(17~30m)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립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애국애족 및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공작물)을 재 건립(취득)하고자 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노후저층주거지역으로 마을 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공동주차장 조성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에 따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 긴급차량 확보 및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예연서원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마을 내 주정차차량의 급증으로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사업추진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건의에 따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 도로 긴급차량 확보 및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3층 증축

- 달성군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 및 잉여농산물의 활용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를 2층으로 건축하여 운영 중으로 1층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능률이 저하,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1층에 설치한 건식 가공장비 및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어 제과·제빵 시설을 3층에 설치하고자 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1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4,697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을 출연금으로 배정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대 표 : 배진환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서초구, (인력) 정원 92명/현원 62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4,697천원(군비 24,697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0년 예산액</th><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 <tr>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합계</td><td></td><td>25,099</td><td>24,697</td><td></td><td></td><td></td><td>24,697</td><td></td></tr> <tr> <td>기관 운영비</td><td>1년</td><td>17,817</td><td>17,041</td><td></td><td></td><td></td><td>17,041</td><td></td></tr> <tr> <td>주요 사업비</td><td>1년</td><td>7,282</td><td>7,656</td><td></td><td></td><td></td><td>7,656</td><td></td></tr> <tr> <td>연구사업</td><td>1년</td><td>3,839</td><td>2,223</td><td></td><td></td><td></td><td>2,223</td><td></td></tr> <tr> <td>자치단체지원</td><td>1년</td><td>3,443</td><td>5,433</td><td></td><td></td><td></td><td>5,433</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계		25,099	24,697				24,697		기관 운영비	1년	17,817	17,041				17,041		주요 사업비	1년	7,282	7,656				7,656		연구사업	1년	3,839	2,223				2,223		자치단체지원	1년	3,443	5,433				5,433	
구 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계		25,099	24,697				24,697																																																					
기관 운영비	1년	17,817	17,041				17,041																																																					
주요 사업비	1년	7,282	7,656				7,656																																																					
연구사업	1년	3,839	2,223				2,223																																																					
자치단체지원	1년	3,443	5,433				5,433																																																					
출 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동)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사업부서 의 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

-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업 및 예산집행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연구과제 160건 수행, 지방세 교육(4,400명)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 그간 지출 절감을 통한 예산을 대부분 청사이전('17년)에 따른 대출 상황에 사용하였으나, '20년 대출상환 완료 예정이므로 향후 중장기 예산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운영실적 평가 >

- 연구과제 발굴시 수요기관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연구과제의 질적, 양적 성과평가 방법의 도입이 요구됨.
- 미션과 비전에 연계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7개의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성과관리체계가 개선되었으나, 추진과제들이 중기(5년)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의 계획은 다소 부족함.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③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결산 지방세	2019년 결산 보통세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190,000,227	189,978,586	24,697	24,697	0	△402

출연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월 설립등기 ◦ 2011. 4월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 8월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 · 파견		
	71명		62명 (연구위원20, 연구원14, 전문직2, 사무직22)		9명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원 (‘20.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성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17. 12. 22. ~ ’20. 12 .21.		
	부이사장	황 명 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 2. 28. ~ ’21. 2. 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정 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 2. 28. ~ ’21. 2. 27.		
	이 사	김 광 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이 사	차 호 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이 사	정 원 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		
	이 사	이 승 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		
	이 사	김 항 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		
	이 사	송 금 현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		
	이 사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감 사	김 영 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용 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 2. 28. ~ ’21.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68,754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19. 12. 31.기준	자산	17,715
	예산액 ²⁾	13,719	12,897	12,378		부채	849
	지자체 지원액 ³⁾	12,102	10,843	11,391		자본 ¹⁾	16,866
경영성과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II. 검토의견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1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 676백만 원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1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대 표 : 차준용(비영리 공익법인, 2008. 10. 15 설립)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12길 66 (화원상설시장 건물 2층) - 기본재산 : 20억원(달성군 출연금) - 주요사업 · 시설운영 : 노인복지관, 장난감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1개 수탁시설 · 모금사업 :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 · 배분사업 : 지정·결연 후원, 저소득 가정 지원, 후원물품 등 · 기획사업 : 홀로어르신 명절나기,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지원 등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676백만원 - 운영비 : 676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0년 요구액</th><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인건비</td><td>2021.01.01~12.31</td><td>379</td><td>397</td><td>397</td><td>-</td><td>-</td><td>397</td><td>-</td></tr><tr><td>기본경비</td><td>2021.01.01~12.31</td><td>194</td><td>201</td><td>201</td><td>-</td><td>-</td><td>201</td><td>-</td></tr><tr><td>사업비</td><td>2021.01.01~12.31</td><td>241</td><td>78</td><td>78</td><td>-</td><td>-</td><td>78</td><td>-</td></tr></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요구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건비	2021.01.01~12.31	379	397	397	-	-	397	-	기본경비	2021.01.01~12.31	194	201	201	-	-	201	-	사업비	2021.01.01~12.31	241	78	78	-	-	78	-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요구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건비	2021.01.01~12.31	379	397	397	-	-	397	-																																		
기본경비	2021.01.01~12.31	194	201	201	-	-	201	-																																		
사업비	2021.01.01~12.31	241	78	78	-	-	78	-																																		
출 연 필요성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출연금 교부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출연금 교부)																																									

사업부서의 견 (총평)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 ○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다둥이 가족 페스티벌을 2021년도에도 달성복지재단 에서 주관할 예정이고 ○ 또한,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1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을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의견

- 2021년 출연금 676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코로나19로 인한 잉여금 증액에 따른 출연금 감액 신청
 - 인건비 및 사회보험 기본 인상률에 맞춰 인건비 기본경비 증액
 - 교육훈련비 및 사업비(다동이가족패스티벌)는 잉여금으로 편성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최종) (A)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C-A)
총 계	803	814	676	676	0	▲138
인건비	307	379	397	397	0	18
기본경비	305	181	197	197	0	16
홍보사업	1	3	3	3	0	0
교육훈련비	18	30	22	22	0	▲8
수탁시설전출금	50	53	53	53	0	0
시설지원사업	27	60	0	0	0	▲60
다동이가족 패스티벌	95	95	0	0	0	▲95
예비비	0	13	4	4	0	▲9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전화번호	053-617-9200	
					홈페이지	www.dswelfare.kr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8.10.15						
임원 (15.9.1. 현 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대표이사 (비상임)	차준용	前달성문화원 원장			2019.01.18~2021.01.17	
	상임이사	최상진	前달성군청 자치행정국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김상근	수경복지재단 이사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장창식	前달성군청소년센터관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이은진	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진덕수	덕수복지재단 이사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이미애	사회복지법인 서재어린이집 원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조갑연	큰나무집궁중약백숙 대표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조병로	달성군립도서관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감사	김대근	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			2019.01.18~2021.01.17	
	비상임감사	김광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19.01.18~2021.01.17	
	주요기능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19. 12.31. 기준	자산	2,683백만원
	예산액	1,466 백만원	1,413 백만원	1,454 백만원		부채	0원
	지자체 지원액	530 백만원	803 백만원	814 백만원		자본	2,683백만원

II. 검토의견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둥이가족 페스티벌을 2021년도에도 달성복지재단에서 주관할 예정이고,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1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1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1,182백만 원

-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2,095백만 원

- ‘건전한 문화예술 선도’의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특히 달성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경우 달성군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홍보 및 가치 상승에 기여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문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3,277백만원(군비 3,277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fcc;">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 기간</th> <th rowspan="2">2020 예산액 <최종></th> <th rowspan="2">2021 요구액</th> <th colspan="5">재 원 별</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ffffcc;">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4,158</td> <td>3,277</td> <td>3,277</td> <td></td> <td></td> <td>3,277</td> <td></td> </tr> <tr> <td>인력운영비</td> <td>1~12월</td> <td>575</td> <td>733</td> <td>733</td> <td></td> <td></td> <td>733</td> <td></td> </tr> <tr> <td>기본경비</td> <td>1~12월</td> <td>188</td> <td>449</td> <td>449</td> <td></td> <td></td> <td>449</td> <td></td> </tr> <tr> <td>달성 100대 피아노</td> <td>9월</td> <td>650</td> <td>0</td> <td>0</td> <td></td> <td></td> <td>0</td> <td></td> </tr> <tr> <td>달성 대구현대 미술제</td> <td>9월</td> <td>400</td> <td>700</td> <td>700</td> <td></td> <td></td> <td>700</td> <td></td> </tr> <tr> <td>달성스토리텔링</td> <td>1~12월</td> <td>250</td> <td>250</td> <td>250</td> <td></td> <td></td> <td>250</td> <td></td> </tr> <tr> <td>달성군립합창단 운영</td> <td>1~12월</td> <td>95</td> <td>95</td> <td>95</td> <td></td> <td></td> <td>95</td> <td></td> </tr> <tr> <td>달성음악회</td> <td>1~12월</td> <td>240</td> <td>0</td> <td>0</td> <td></td> <td></td> <td>0</td> <td></td> </tr> <tr> <td>예술자치구역</td> <td>1~12월</td> <td>150</td> <td>150</td> <td>150</td> <td></td> <td></td> <td>150</td> <td></td> </tr> <tr> <td>문화기획지원</td> <td>1~12월</td> <td>120</td> <td>120</td> <td>120</td> <td></td> <td></td> <td>120</td> <td></td> </tr> <tr> <td>성악중창페스티벌</td> <td>12월</td> <td>90</td> <td>0</td> <td>0</td> <td></td> <td></td> <td>0</td> <td></td> </tr> <tr> <td>달천예술창작 공간 운영</td> <td>1~12월</td> <td>65</td> <td>150</td> <td>150</td> <td></td> <td></td> <td>150</td> <td></td> </tr> <tr> <td>2020 도동페스타</td> <td>1~12월</td> <td>135</td> <td>0</td> <td>0</td> <td></td> <td></td> <td>0</td> <td></td> </tr> <tr> <td>문화도시지정 공모사업</td> <td>1~12월</td> <td>200</td> <td>300</td> <td>300</td> <td></td> <td></td> <td>300</td> <td></td> </tr> <tr> <td>버스킹 in달성</td> <td>1~12월</td> <td>0</td> <td>50</td> <td>50</td> <td></td> <td></td> <td>50</td> <td></td> </tr> <tr> <td>새봄맞이음악회</td> <td>1~3월</td> <td>0</td> <td>45</td> <td>45</td> <td></td> <td></td> <td>45</td> <td></td> </tr> <tr> <td>계간지발간</td> <td>1~12월</td> <td>0</td> <td>60</td> <td>60</td> <td></td> <td></td> <td>60</td> <td></td> </tr> <tr> <td>10주년기념백서 제작아카이브구축</td> <td>1~12월</td> <td>0</td> <td>95</td> <td>95</td> <td></td> <td></td> <td>95</td> <td></td> </tr> <tr> <td>학술세미나· 비전선포식</td> <td>1~12월</td> <td>0</td> <td>40</td> <td>40</td> <td></td> <td></td> <td>40</td> <td></td> </tr> <tr> <td>달성고유물 수집 사업</td> <td>1~12월</td> <td>0</td> <td>40</td> <td>40</td> <td></td> <td></td> <td>40</td> <td></td> </tr> <tr> <td>기본재산 적립금</td> <td>1~12월</td> <td>1,000</td> <td>0</td> <td>0</td> <td></td> <td></td> <td>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0 예산액 <최종>	2021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 계		4,158	3,277	3,277			3,277		인력운영비	1~12월	575	733	733			733		기본경비	1~12월	188	449	449			449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650	0	0			0		달성 대구현대 미술제	9월	400	700	700			700		달성스토리텔링	1~12월	250	250	250			25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95	95	95			95		달성음악회	1~12월	240	0	0			0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150	150			150		문화기획지원	1~12월	120	120	120			120		성악중창페스티벌	12월	90	0	0			0		달천예술창작 공간 운영	1~12월	65	150	150			150		2020 도동페스타	1~12월	135	0	0			0		문화도시지정 공모사업	1~12월	200	300	300			300		버스킹 in달성	1~12월	0	50	50			50		새봄맞이음악회	1~3월	0	45	45			45		계간지발간	1~12월	0	60	60			60		10주년기념백서 제작아카이브구축	1~12월	0	95	95			95		학술세미나· 비전선포식	1~12월	0	40	40			40		달성고유물 수집 사업	1~12월	0	40	40			40		기본재산 적립금	1~12월	1,000	0	0			0	
구 분	사업 기간	2020 예산액 <최종>	2021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 계		4,158	3,277	3,277			3,277																																																																																																																																																																																																													
인력운영비	1~12월	575	733	733			733																																																																																																																																																																																																													
기본경비	1~12월	188	449	449			449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650	0	0			0																																																																																																																																																																																																													
달성 대구현대 미술제	9월	400	700	700			700																																																																																																																																																																																																													
달성스토리텔링	1~12월	250	250	250			25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95	95	95			95																																																																																																																																																																																																													
달성음악회	1~12월	240	0	0			0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150	150			150																																																																																																																																																																																																													
문화기획지원	1~12월	120	120	120			120																																																																																																																																																																																																													
성악중창페스티벌	12월	90	0	0			0																																																																																																																																																																																																													
달천예술창작 공간 운영	1~12월	65	150	150			150																																																																																																																																																																																																													
2020 도동페스타	1~12월	135	0	0			0																																																																																																																																																																																																													
문화도시지정 공모사업	1~12월	200	300	300			300																																																																																																																																																																																																													
버스킹 in달성	1~12월	0	50	50			50																																																																																																																																																																																																													
새봄맞이음악회	1~3월	0	45	45			45																																																																																																																																																																																																													
계간지발간	1~12월	0	60	60			60																																																																																																																																																																																																													
10주년기념백서 제작아카이브구축	1~12월	0	95	95			95																																																																																																																																																																																																													
학술세미나· 비전선포식	1~12월	0	40	40			40																																																																																																																																																																																																													
달성고유물 수집 사업	1~12월	0	40	40			40																																																																																																																																																																																																													
기본재산 적립금	1~12월	1,000	0	0			0																																																																																																																																																																																																													

출연 필요 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부서 의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 3. 25. ~ 6. 22.)

- 2020년(2019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79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7.89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4.75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9.15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1.79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1년 출연금 3,277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182백만원

- 2021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자체사업비 2,095백만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최종> (A)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 (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 (C-A)
총 계	2,804	4,158	3,279	3,277	△2	△881
기관운영비	818	763	1,184	1,184	△2	419
인력운영비	521	575	734	733	△1	158
기본경비	297	188	450	449	△1	261
자체사업비	1,986	2,395	2,095	2,095	0	△300
달성 100대 피아노	529	650	0	0	0	△65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361	400	700	700	0	300
달성스토리텔링	189	250	250	250	0	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88	95	95	95	0	0
달성음악회	236	240	0	0	0	△240
예술자치구역	116	150	150	150	0	0
문화기획지원	246	120	120	120	0	0
성악중창페스티벌	86	90	0	0	0	△90
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	0	65	150	150	0	85
2020 도동페스타	0	135	0	0	0	△135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0	200	300	300	0	100
버스킹 in 달성	0	0	50	50	0	50
새봄맞이음악회	0	0	45	45	0	45
계간지발간	0	0	60	60	0	60
10주년기념백서제작 아카이브구축	0	0	95	95	0	95
학술세미나·비전 선포식	0	0	40	40	0	40
달성고유물 수집사업	0	0	40	40	0	40
중장기발전계획연구사업	49	0	0	0	0	0
도동서원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음악고하	86	0	0	0	0	0
기본재산적립금	0	1,000	0	0	0	△100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05.17. 등기						
임원 (20.11.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서정길	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2020.8.20.~2022.08.19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이치우	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김정화	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생활음악)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전유진	달성군학부모협회 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표준식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0.8.23.~2022.8.22	
	감사	김진천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19.12.31 기준	자산	6,708백만원
	예산액	4,213	4,866	6,692		부채	3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3,190	3,393	5,437		자본	6,705백만원

-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II. 검토의견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 가치 증대와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함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 제고를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1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3,000백만 원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0백만 원
 -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달성군 출연금 3,000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 기본재산 이자수익을 통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24,246백만원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3,000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 분</th><th rowspan="2" style="width: 10%;">사업 기간</th><th rowspan="2" style="width: 10%;">2021년 요구액</th><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재 원 별</th></tr> <tr> <th style="width: 10%;">계</th><th style="width: 10%;">국비</th><th style="width: 10%;">시비</th><th style="width: 10%;">군비</th><th style="width: 10%;">기타</th></tr> <tr> <td>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2021년</td><td style="border: 2px solid red;">3,000</td><td>3,0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3,0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1년	3,000	3,000	-	-	3,000	-
구 분	사업 기간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1년	3,000	3,000	-	-	3,000	-																					
출 연 필요성	○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근 거 법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 의 견 (총평)	○ 우리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3,000백만 원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00백만 원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출연액	2020년 출연액(최종) (A)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 (C-A)
총 계	3,320	4,310	3,000	3,000	0	△1,31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3,320	4,310	3,000	3,000	0	△1,31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982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 4. 4. 법인성립년월일 : 2000. 4. 26.						
임원 (2011. 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당연직)			2010. 7.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정기호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18. 1.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번영회 회장			2019. 6. 21~ 2023. 6. 20	
	비상임이사	서정우	前 달성군의원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명규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길중	자동차보험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0. 1. 8 ~ 2020.12.23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동조	前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이대현	농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지팔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감사	채수열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19. 6.21 ~ 2021. 6.20	
	비상임감사	임동화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19. 7. 1 ~ 재직기간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19.12.31. 기준	자산	20,588백만원
	예산액	3,446백만원	3,626백만원	4,649백만원		부채	340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3,010백만원	3,320백만원	4,310백만원		자본	20,248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II. 검토의견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연금 3,000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1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 ☐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최대한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 SOC사업 등 기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및 포용적 안전
망 강화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은 연속성을 유지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 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

4. 예산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813,000	100.00	
일 반 회 계		804,900	99.00	
특 별 회 계		8,100	1.00	
	기 타 특 별 회 계	8,100	1.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740	0.34	
	의 료 급 여 기 금	694	0.09	
	기 반 시 설	110	0.01	
	치 수 사 업	4,556	0.56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813,000	769,000	44,000	5.72
일반회계	합 계	804,900	760,000	44,900	5.91
	지방세수입	193,866	177,676	16,190	9.11
	세외수입	34,437	34,488	△51	△0.15
	경상적 세외수입	24,761	24,162	600	2.48
	임시적 세외수입	5,199	4,818	380	7.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77	5,507	△1,030	△18.72
	지방교부세	143,624	143,850	△226	△0.16
	조정교부금등	32,479	29,000	3,479	12
	보조금	337,186	304,535	32,651	10.72
	국고보조금등	229,499	202,083	27,417	13.57
	시·도비보조금등	107,687	102,453	5,234	5.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3,308	70,451	△7,143	△10.14
특별회계	합 계	8,100	9,000	△900	△10.00
	세외수입	71	118	△47	△39.91
	경상적세외수입	40	87	△47	△54.11
	임시적세외수입	31	31	0	0
	보조금	604	573	31	5.42
	국고보조금등	483	458	25	5.42
	시·도비보조금등	121	115	6	5.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25	8,309	△884	△10.64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13,000	769,000	44,000	5.72
일반회계	계	804,900	760,000	44,900	5.91
	일반공공행정	51,152	44,081	7,070	16.04
	공공질서및안전	2,911	2,908	3	0.12
	교육	11,102	11,433	△332	△2.90
	문화 및 관광	36,532	32,610	3,923	12.03
	환경	25,959	24,793	1,166	4.70
	사회복지	317,853	296,262	21,590	7.29
	보건	20,358	28,004	△7,646	△27.30
	농림해양수산	56,139	44,401	11,738	26.4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08	2,754	954	34.63
	교통및물류	109,226	89,054	20,172	22.65
	국토및지역개발	65,026	62,855	2,172	3.46
	예비비	8,842	10,559	△1,717	△16.26
	기타	96,091	110,286	△14,195	△12.87
특별회계	계	8,100	9,000	△900	△10.00
	환경	2,740	2,767	△27	△0.98
	사회복지	500	470	30	6.38
	국토및지역개발	427	5,280	△4,853	△91.92
	기타	4,433	483	3,950	818.37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13,000	769,000	44,000	5.72
계		804,900	760,000	44,900	5.91
인 건 비		90,199	85,611	4,588	5.36
물 건 비		42,543	44,033	△1,490	△3.38
	일 반 운 영 비	32,138	32,383	△245	△0.76
	여 비	2,615	2,850	△235	△8.26
	업 무 추 진 비	735	729	6	0.76
	직무 수행 경비	2,510	2,411	99	4.12
	의 회 비	579	579	0	0.04
	재 료 비	2,355	2,344	10	0.49
	연 구 개 발 비	1,612	2,737	△1,125	△41.11
경 상 이 전		430,024	401,936	28,088	6.99
자 본 지 출		231,160	196,199	34,960	17.82
	시설비및부대비	212,030	175,590	36,440	20.75
	민간 자본 이전	9,150	9,974	△824	△8.2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869	2,590	1,279	49.38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80	810	△130	△16.04
	자 산 취 득 비	5,430	7,235	△1,805	△24.95
융자 및 출자		10	10	0	0
내 부 거 래		1,809	21,637	△19,828	△91.64
예비비 및 기타		9,154	10,573	△1,419	△13.42
특 별 회 계	계	8,100	9,000	△900	△10
	인 건 비	343	403	△60	△14.78
	물 건 비	27	29	△2	△7.86
	경 상 이 전	480	450	30	6.67
	자 본 지 출	371	260	111	42.57
	내부거래	6,750	0	6,750	순증
	예비비 및 기타	129	7,858	△7,729	△98.35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7,690억원 보다 440억원(5.72%)이 늘어난
8,13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7,600억원 보다
449억원이 증가된 8,049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90억원 보다 9억원이 감소한 81억원입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있어

- 지방세 1,938억 6천만원으로 24.09%이며,
세외수입 344억 3천만원으로서 4.28%이고,
지방교부세 1,436억 2천만원으로 17.84%,
조정교부금등 324억원으로 4.04%,
보조금은 3,371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33억원으로 7.8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전년대비 8천8백만원이 늘어난 110억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108억 증가한 580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7억5천만원 늘어난 407억원
담배소비세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155억원

지방소비세로 2020년분 조정교부금 보전분 42억원
전환사업 보전분 37억원
지방소득세 574억원, 지난년도수입 30억원 등
총 161억원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1,938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344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7억 6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 9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억2천만원이 감소한
1,436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조정교부금등은 34억 7천만원이 증가한
3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274억 1천만원 늘어난
2,294억 9천만원,
시·도비보조금등 52억원이 늘어난 1,076억 8천만원으로
총 3,37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33억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7,088억원,

재무활동비로 21억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3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분야별로는

-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04% 증가한 511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12% 증가한 29억원
- 교육분야에 2.9% 감소된 111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03%가 증가한 365억원
- 환경분야에 4.70% 증가한 259억원
- 사회복지분야에 7.29% 증가된 3,178억원
- 보건분야에 27.30% 감소한 203억원
-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26.43%가 증가된 561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34.63% 증가된 37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에 22.65% 증가된 1,092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6% 증가된 650억원
- 예비비·기타 1,0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보수 539억 9천만원, 기타직보수 30억 86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8억 4천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72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5.36% 증가된 90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의 감소로
총 15억(3.38%)이 감소한
425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019년대비 280억 8천만원이 늘어난
4,3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2,120억, 민간자본이전 91억 5천만원, 자
치단체 등 자본이전 38억 6천만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억 8천만원, 자산취득비 54억원 등
총 2,31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 3천만원,
기금전출금에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읍·면 예산의 경우

- 읍·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
읍장은 360만원, 면장은 240만원,
다사읍의 경우 과장 240만원, 다사읍장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읍은 3억5천만원, 면은 2억8천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고,

- 전체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청사관리 등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화원 56억여원, 논공 46억여원, 다사 63억여원, 유가 41억여원, 옥포 39억원, 현풍 38억여원, 가창 28억여원, 하빈 26억여원, 구지 30억여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읍면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4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9억원이 감소된 8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천7백만원 감소한 27억 4천원으로 편성하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천 1백만원 증가된 6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백만원이 감소한 1억 1천만원,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억 9천 6백만원이 감소된 45억 5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20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등 대부분 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 세외수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기타 사용료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 아울러,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지방교부세도 함께 축소 전망되나, 코로나 19에 따른 지원책,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주요복지정책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 증가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 권역별 공공시설물 건립, 생활 SOC, 농축산 부문 경쟁력 강화, 화석박물관 건립과 여성문화 복지센터 증축 등 지역기반 확충을 위한 지출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39.49%로 가장 비중이 많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이 13.57%, 국토 및 지역개발이 8.08%이고, 농림해양수산업이 6.97%, 일반공공행정이 6.36%, 문화 및 관광이 4.54% 순입니다.

-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의 절차이행에 노력하였으며 사전절차에 누락된 대상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건설도시 부문 및 사회기반 및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총액 범위 준수 및 지원 근거에 맞게 내실있는 지원 및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지역 균형 예산 편성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사업의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증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연도 내에 집행 가능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회계로써 특별회계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기금의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 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 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대구 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 으로 관리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대구 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 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자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 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위생과	
자활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 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 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 조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활용을 위 하여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방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8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 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대구광역 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과	
체육진흥기금	1999	군민들의 체력 증진 및 지 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 업 추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0조	문화체육과	

4. 기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77,888	1,779	232	2	68,477	6,750	572	76	77,888	1,098	30	1	76,513	24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356	0	0	0	56,958	0	399	0	57,356	0	0	0	57,356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797	0	0	0	0	6,750	47	0	6,797	0	0	0	6,797	0
식품진흥기금	175	0	32	0	99	0	6	38	175	78	0	1	51	46
자활기금	883	0	0	2	830	0	13	38	883	10	30	0	843	0
재난관리기금	11,405	1,679	0	0	9,629	0	96	0	11,405	990	0	0	10,415	0
육외광고발전기금	506	100	200	0	205	0	1	0	506	0	0	0	306	200
체육진흥기금	766	0	0	0	756	0	10	0	766	20	0	0	746	0

5.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㉑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입㉓	지출㉔		
합 계	68,476,822	9,410,948	1,374,290	76,513,480	8,036,6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6,957,795	398,704	0	57,356,499	398,7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6,797,250	0	6,797,250	6,797,250
식품진흥기금	98,813	76,000	124,290	50,523	△48,290
자활기금	829,689	52,912	40,000	842,601	12,912
재난관리기금	9,629,311	1,775,385	990,000	10,414,696	785,385
옥외광고발전기금	204,807	301,433	200,000	306,240	101,433
체육진흥기금	756,407	9,264	20,000	745,671	△10,736

6. 기금별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지원대상

- 세입감소 또는 심각한 경제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 2021년 주요사업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57,356,499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a)	2021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예치금	대구은행	36,300,021	56,957,795	57,356,499	398,70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지원대상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2021년 주요사업

- 통합계정 예치금 6,797,25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a)	2021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예치금	대구은행	0	0	6,797,250	6,797,250	

□ 식품진흥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자 및 관련 단체
-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 2021년 주요사업

- 음식박람회 참관 및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2,800천원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 (160개소) 16,000천원
- 제9회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지원 30,0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 지원 10,000천원
- 뮤지컬로 배우는 음식문화개선 1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①	2021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합 계		134,453	98,813	50,523	△48,290	
예치금	대구은행	90,000	90,000	50,000	△40,000	정기예금
	대구은행	44,453	8,813	523	△8,290	보통예금

□ 자활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 2021년 주요사업

- 점포 전세금 대여 30,000천원
-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및 소양직무 교육 1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①	2021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805,681	829,689	842,601	12,912	

□ 재난관리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 전 지역

○ 2021년 주요사업

- 재해예방 홍보(팜플렛, 현수막 등)제작 10,000천원
- 감염병 확산방지 물품 및 약품 구입 20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300,000천원
- 읍면별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450,000천원
- 제설장비 구입 3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①	2021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합 계		8,340,453	9,629,311	10,414,696	785,385	
예치금	대구은행	40,453	29,311	814,696	785,385	일반예금
	대구은행	1,000,000	1,500,000	1,50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500,000	500,000	50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500,000	1,300,000	1,30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1,000,000	1,000,000	1,00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300,000	300,000	30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3,000,000	3,000,000	3,00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2,000,000	2,000,000	2,000,000	0	정기예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대상

○ 2021년 주요사업

-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306,240천원
-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일반회계 전출금 2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①	2021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100,000	204,807	306,240	101,433	

□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격려
- 유소년·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 기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 2021년 주요사업

- 지역 체육진흥 사업 : 20,000천원, 예치금 745,671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①	2021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예치금	대구은행	764,455	756,407	745,671	△10,736	

7. 종합검토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 당분간 우리군의 기금운용은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특수한 목적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등 모두 7개의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재난재난관리기금은 1개의 일반예금과 7개의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기예금을 3~4개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